퇴직연금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

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 당	책임자					

						전 산 인	자 란							
										20		 년	월	일
		은행 시	l용란			-	 구분			고객기자			_	
							성명(업체명)							
				생년	크 <u>월</u> 일	년 월 일 □ 고객				고객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변경없	음	
		은행에 등	등록된			휴대전화 (()	-		☐ SKT	□ KT □	LGU+
	-	고객님의 정.	보입니	다.		E-m	ail 주소	@						
		주소	자택											
			직장											
				자틱	자택전화 () -									
			직각	당전화	() -									
			우편물수령처		□ 자택 □ 직장 전화연락처 [□ 자 ^년	□ 자택 □ 직장 □ 휴대폰				
^{등록} 1. 신청	록된 고객정보 5 구분	로 통합되어 관련	리 되오니	I 등 록 된 고객정	정보를 확인히	시기 바랍니다.								
제도 DB DC 기업형RP 기간인				- GIKP	계좌번호 또는	외사병	DC,7	겁형IRP으	기기입기	나는 오	시 성 식	79		
2.운용	지시					ı								
신청	청구분	□ 등록 □	변경	운용지	시방법	□ 일반상	품 □ 포괄운{	} 지시 ^{주1)}	□로보어	드바이지	서 추천 ¹	떤드싱	품(DB자	테외)
				담금(퇴직금					부담금(DB)	데도 작성	비대선			
		상품명				매수비율(%)		상품명				0	매수비율(%)	
_ 계		(†	띨수)			(필수)			(필수)				(필수))
 속 성 ^{주2)}														
Ü														
							DC, 기업형IRF 만원 한도 내)							
기업부담금(퇴직금)			개인부담금(DB제도 3											
_ 일		싱	분명			매수비율(%)			상품명			0	H수비율	(%)
일 회 성 ^{주2)}		(I	띨수)			(필수)			(필수)				(필수))
	할 상품 개수	가 위에 칸보다	많은 경	· 경우 "퇴직연금	· 매수예정성	남품 등록/변경	 신청서[별지]"양	식에 작성	하시기 바랍	니다.				

주1) 포괄운용지시란 가입자가 운용방법(상품 만기 등), 운용지시비율을 지정하면 **입금 및 만기시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지방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외)중 최적금리 상품을 자동매수하는 운용지시 방법입니다.** 계속성 운용지시를 포괄운용지시로 선택한 경우 비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해 일반상품 운용지시와 혼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6개월,1/2/3/5년제 가능), (포괄)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00% + 펀드상품 00%**

작성불가)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 00저축은행 정기예금 0년제 + 편드, (포괄)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 00은행 정기예금 0년제 주2) "계속성"은 향후 들어오는 입금액에 대한 운용지시를 말하며, "일회성" 등록 후 최초 입금 건의 운용지시에 한합니다.

ㅎ 하나은행

3. 전니금보경경품 운행시시	에 내한 고객 확인						
	L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의사임을 확인 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 수령함 □ 수령거절함]						
199.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하나은행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15.7.1 이전에 '하나온행 정기예금'을 운용지시한 경우('15.7.1부터 '하나온행 정기예금' 매수불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상품제공기관이 제공 한도를 초과하여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체상품 매수 □ 동의 □ 미동의						
은행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어 송매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	ll 가입하신 손님께 만기도래 15일전까지 문자메세지(또는 SNS) 또는 E-Mail을 통하여 만기예고를 안내드리오니 발 라니다						
	[□ 이메일 □ 문자메세지(또는 SNS) □ 수신거부]						
4. 통지서비스 신청							
1) 법적통지 법적 통지는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통지순서에 따라 발송되며, 우편물은 자택 또는 직장(DC,기업형IRP는 직장우선)으로 발송됩니다.							
통지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기업부담금 미납통지(DC,기업형IRP), 운용현황통지(별도 선택 없는 경우 분기통지), 재정 검중관련 안내(DB제도),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안내, 위험자산 비율이 총적립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운용지 시보호조치 안내, 감독규정에 의한 상품매매불능 안내, 계약서(약관) 변경 사항 등						
통지순서 ①	① 이메일 → ②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SNS 등) → ③ 우편(단, 가입자교육 최초1회는 우편)						
2) 운용수익통지							
월말 펀드 수익률 통지	통지신청여부 [□신청 □신청안함] 통지방법 [□이메일 □문자메세지(또는 SNS)] *매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평가액-투자원금)÷투자원금X100)로 계산하여 다음 월 통지						
월말 적립금 운용 안내	통지신청(문자메세지 또는 SNS)여부 [□신청 □신청안함]						
3) 서비스통지 아래 통지내용에 대한 수령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신청"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제외 : 신청 신청안함							
	매수예정상품, 보유상품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개인형 IRP의 경우 : 퇴직금 입금 또는 지급안내, 해지 결과 안내, 연금수령신청 사전 안내, 연금수령내역 안내						
통지매체 이	이메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SNS 듕), 문자메시지						

5. 포괄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운용방법에 "포괄운용지시" 체크한 경우 반드시 작성)

- 1) 적립금 입금, 상품(시중은행 정기예금) 만기시마다 은행에서 제공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손님이 요청한 상품운용기간을 반영하여 최적금리상품 **으로 매수**합니다.
- 2)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금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준수, 상품제공기관의 상품제공 거절, 상품제공기관의 당행 상품제공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온행이 정한 차선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운용지시가 반드시 최고금리상품의 매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보유 중인 만기도래상품은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액 매도 후 매도 당일 지정된 포괄운용지시상품(매도 당일 최적금리상품) 으로 익영업일에 매수되며, **매수일자 기준 고시금리로 적용됩니다.**
- 4) 매도 후 신규 매수된 상품이 기존 상품과 동일할 수 있으며, 매수매도거래에 따라 만기일과 신규매수일까지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5) 포괄운용지시 등으로 상품 매도/매수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포괄운용지시 해제 이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시 최종보유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됩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6. 매수예정 상품 등록/변경에 따른 핵심 설명 확인서

상품 운용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상품의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익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u>매매 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매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u> (정기예금 : 1~2영업일 / 수익중권 등 금융투자상품 :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 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일 이전 해지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상품운용방법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1)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2)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3)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만기도래 시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하되 재예치된 금액과 다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예금자보호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 GIC)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DC,IRP)에 가입한 경우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 (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등)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수익증권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수익 중권 등은 상품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서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중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투자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익중권 등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시간에도 불구하고, <u>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시간은 익영업일로 순연되어 적용</u>됩니다.(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 1영업일)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근로자(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 시 유의사항 확인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집합투자증권) + 퇴직연금(DC, IRP)] 의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 계약금액/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금융기관 정보를 조회에 대한 동의를 본 신청서로 확인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하여 입금예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납입에 따른 확인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상 수수료율 기재)에 의거 매년 계약용당일 (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 적립금 차감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별도납부(단,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적립금 차감)

본인은 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에에 따른 유의사항, 상품 핵심 설명 확인서 및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가입자 자필기재:설명 듣고 이해] 하였기에 퇴직연금 매수예정상품을 등록 또는 변경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